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

①사업부서	공익보호지원과	②담당자 (연락처)	사업담당자: 사무관 오병철 (02-360-3765) 사업부서장: 공익보호지원과장 최창우 (02-360-3760)
③정책사업명	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		
④선정기준	법령 개정사항	⑤사업기간	‘14.3.~’14.10.
⑥주요내용	□ 추진배경 ○ 공익신고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보상금 집행이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, 전문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한 방안 마련 필요 ○ 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피신고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현행 법령 상 관련 규정 미비, 행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신설 □ 개정안 주요내용 ○ 보상금 지급 하한선의 상향 조정(10만원⇒20만원) ※ 보상대상 행정처분액 상향(50만원⇒100만원) ○ 전문신고자 보상금 지급건수 제한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※ 공신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‘보상금 지급절차, 지급방법, 지급제한’ 등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, 세부사항은 ‘위원회 고시’로 정함 (동일인 연간 지급건수, 감액·미지급 사유 구체화 등) ○ 구조금을 지급한 때 피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결정 및 방법 신설 등 ※ 위원회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절차를 따름		